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전년에 이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정·고용·언어생활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 (성별) 남성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이 높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음
- (연령대) 비전문취업은 30대(45.5%), 방문취업은 50대(50.4%), 유학생은 15~29세(90.1%),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7.7%)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교육수준) 대졸 이상 비중은 전문인력(59.4%)이 가장 높고, 전문인력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고졸 비중이 가장 높음
- (국적) 한국계중국 비중은 방문취업(86.2%), 재외동포(74.5%) 등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기타아시아(86.3%)와 베트남(13.5%) 비중이 높음
- (거주지역) 경기도 거주 비중은 방문취업(47.0%), 재외동포(43.9%), 영주(42.9%) 등에서 높으며, 이들 체류자격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70% 이상임

2. 외국인의 가정 생활

- (거처 종류) 방문취업(85.9%), 유학생(73.1%), 재외동포(71.5%)는 일반 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기숙사(47.3%) 거주 비중이 높음
- (점유 형태) 전·월세 거주하는 비중은 유학생(92.3%), 방문취업(85.2%), 재외동포(72.5%) 등에서 높고, 비전문취업(77.1%)은 무상 비중이 높음
- (함께 사는 사람) 비전문취업은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과 함께 사는 비중(63.8%)이 가장 높고,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비중(2.1%)은 전체 체류자격 중 가장 낮음
- (현재 거주지 거주 이유) 비전문취업(94.0%), 전문인력(79.4%)은 취업 및 직장변동에 의한 비중이 가장 높음
- (소득 대비 자녀 교육비 부담) 결혼이민은 부담되지 않음(38.9%)이 가장 높고, 결혼이민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부담됨이 높음

3. 외국인의 고용 현황

- (취업자)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은 비전문취업(99.7%), 전문인력(99.1%), 영주(74.4%), 방문취업(74.4%)이 높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중은 비전문취업(29.9%)이 가장 높음
- (실업자) 체류자격별 실업자 비중은 방문취업(5.7%), 유학생(4.1%), 영주(3.8%), 재외동포(3.8%)가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 체류자격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유학생(79.7%)이 가장 높음

4. 외국인의 언어 생활

-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경험)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은 20.8%로, 유학생(55.6%), 전문인력(30.1%)이 높음
- (한국어 실력)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으로, 영주(4.3점), 재외동포(4.2점), 방문취업(3.8점) 순이고, 비전문취업(2.8점), 전문인력(2.8점)은 낮음

5.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

- **(한국 생활 만족도)**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비전문취업(4.4점)이 가장 높고, 방문취업·유학생·재외동포(4.2점)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보다 낮음
- **(차별 경험)**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이며, 체류자격별로 유학생(27.7%)이 가장 높음

위와 같이 이번 기획보도는 국내에 체류하는 상주 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상세화하여, 가정·고용·언어 측면에서의 한국 생활 모습과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내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에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 관련 이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 20일부터 실시되는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책임자	과 장	송준행 (042-481-2264)
		담당자	사무관	김성규 (042-481-2339)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철 (02-2110-4108)
		담당자	서기관	이한식 (02-2110-4106)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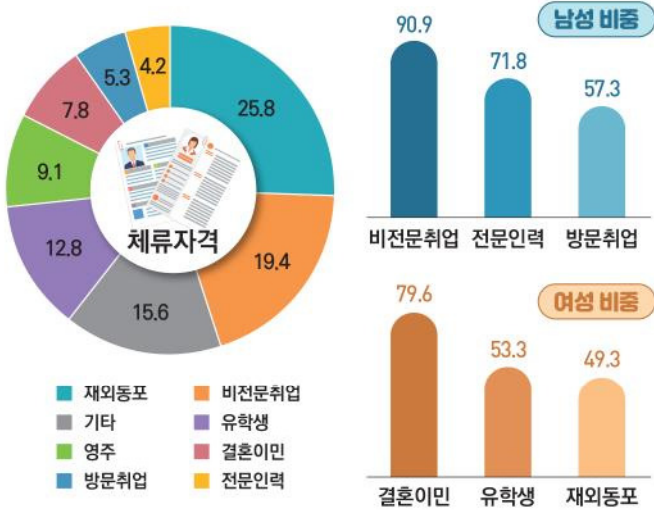
일 리 두 기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 모집단은 2024. 5. 15. 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입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 이 보도자료는 외국인 2만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통항목(기본항목, 고용,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한국어능력, 체류사항)에 대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 보도자료의 체류자격 구분은 ①비전문취업(E-9), ②방문취업(H-2), ③전문인력(E-1~E-7), ④유학생(D-2, D-4-1, D-4-7), ⑤재외동포(F-4), ⑥영주(F-5), ⑦결혼이민(F-6), ⑧기타입니다.
-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제주로 구분하였습니다.
- 산업분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직업분류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된 것으로 전체 수치와 통계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숫자 없음, 조사된 표본 없음, 「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냅니다.
- 상대표준오차(RSE)가 25%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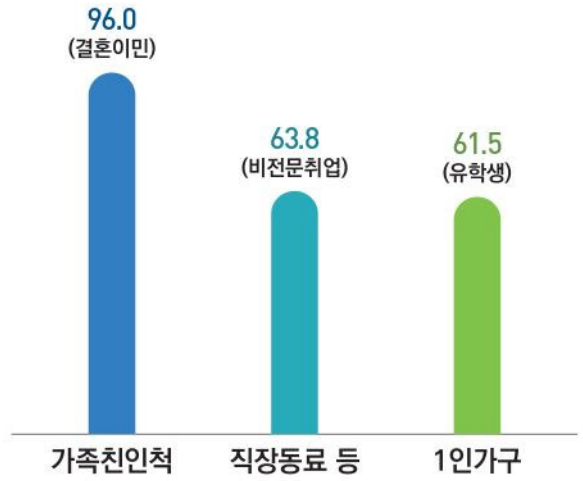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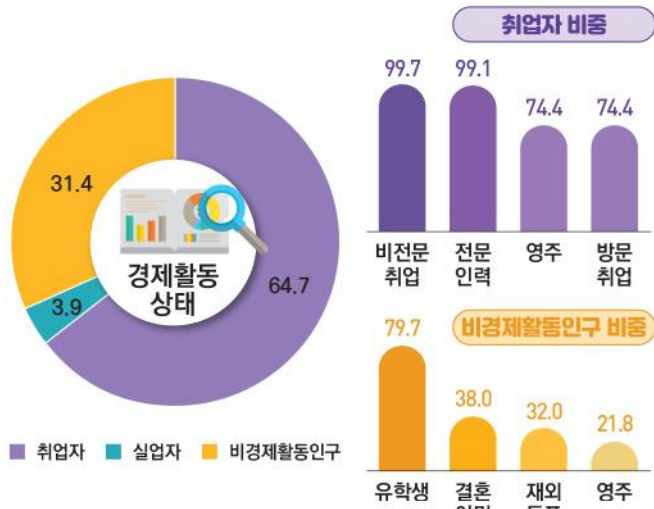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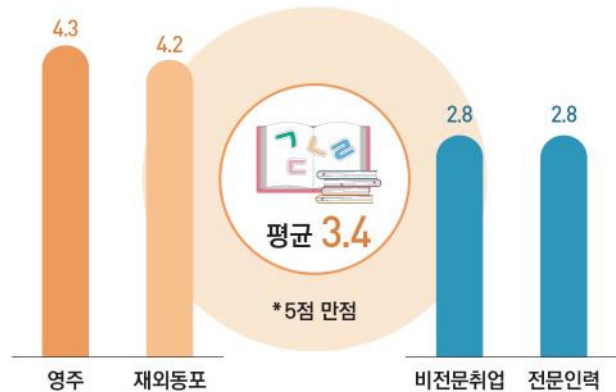
가정 생활: 함께 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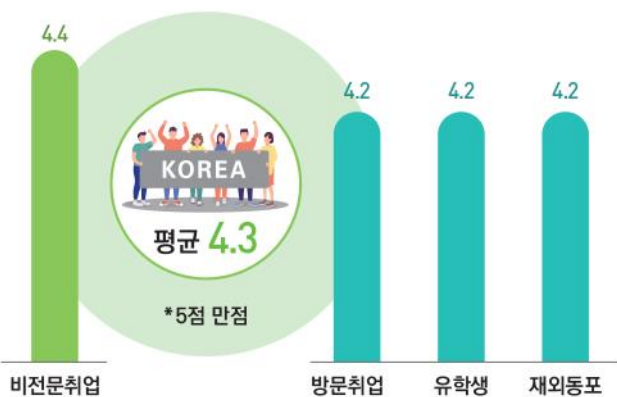
고용 현황: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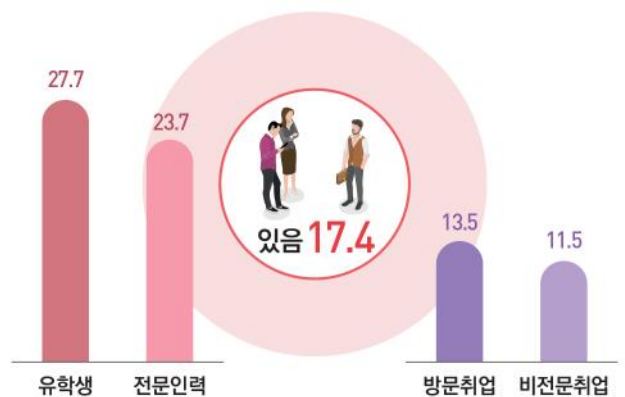
언어 생활: 한국어 실력(점)



한국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점)



차별 경험(%)



목 차

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현황(15세 이상)	1
2. 외국인의 가정 생활	4
2-1. 거처 종류 및 점유 형태	4
2-2. 함께 사는 사람	5
2-3. 현재 거주지 거주 이유	6
2-4. 자녀교육 어려움 여부 및 교육비 부담 정도	7
3. 외국인의 고용 현황	8
3-1. 경제활동상태	8
3-2.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9
3-3. 취업시간별 취업자	11
3-4.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12
3-5. 실업자의 구직경로(복수응답)	13
3-6. 비경제활동인구 주된 활동상태	13
4. 외국인의 언어 생활	14
4-1.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경험 유무 및 급수	14
4-2. 한국어 실력	15
5.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	17
5-1. 한국 생활 만족도	17
5-2. 차별 경험	20
# 부록	21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현황(15세 이상)

- (성별)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이하 '외국인')은 156만 명으로, 남성(57.8%)이 여성(42.2%)보다 15.6%p 높음
 - 남성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이 높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음
- (연령대) 외국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15~29세(29.7%), 30대(27.7%), 40대(15.5%) 순임
 - 비전문취업의 30대 이하 비중은 90.7%이고, 방문취업은 50대(50.4%),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7.7%)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전문인력(50.4%)과 결혼이민(41.5%)은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유학생의 90.1%는 15~29세임
- (교육수준) 외국인의 교육수준별 비중은 고졸(43.1%), 대졸이상(31.1%) 순임
 - 전문인력의 대졸 이상 비중은 59.4%이고, 전문인력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고졸 비중이 가장 높음

< 체류자격별 성·연령대·교육수준별 외국인 >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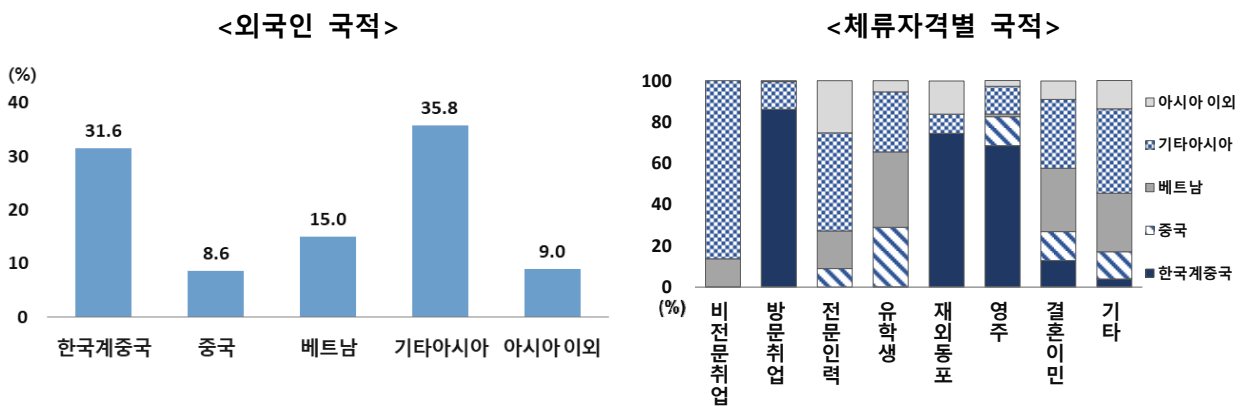
	외국인 (천명)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남성	여성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외국인	1,561	57.8	42.2	29.7	27.7	15.5	13.7	13.5	8.7	17.1	43.1	31.1
비전문취업	303	90.9	9.1	45.2	45.5	9.3	-	-	7.1	17.5	50.1	25.4
방문취업	83	57.3	42.7	8.1	11.2	22.4	50.4	7.7	13.4	27.3	44.4	14.8
전문인력	66	71.8	28.2	27.8	50.4	17.9	3.2	0.8	4.0	8.7	27.9	59.4
유학생	200	46.7	53.3	90.1	9.2	0.8	-	-	-	0.1*	70.2	29.7
재외동포	402	50.7	49.3	7.7	17.5	16.6	20.5	37.7	11.7	21.8	38.0	28.5
영주	141	50.7	49.3	3.9	22.5	26.2	27.2	20.2	6.9	21.7	42.7	28.6
결혼이민	122	20.4	79.6	16.6	41.5	23.9	12.3	5.8	9.8	16.2	38.9	35.2
기타	244	56.4	43.6	26.5	32.9	20.0	14.0	6.6	13.3	19.8	26.4	40.5

□ (국적) 외국인 국적 비중은 한국계중국(31.6%), 베트남(15.0%) 순이고, 아시아(91.0%)의 비중이 높음

○ 비전문취업(86.3%), 전문인력(47.5%), 결혼이민(33.4%)은 기타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음

*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네팔 등

○ 방문취업(86.2%), 재외동포(74.5%), 영주(68.5%)는 한국계중국 비중이 가장 높고, 유학생은 베트남(36.5%) 비중이 가장 높음



< 체류자격별 국적별 외국인 >

(단위: %)

	합계	아시아					기타 아시아 ¹⁾	아시아 이외
		아시아	한국계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외국인	100.0	91.0	31.6	8.6	15.0	35.8	9.0	
비전문취업	100.0	100.0	-	0.2	13.5	86.3	-	
방문취업	100.0	99.5	86.2	-	-	13.4	0.4	
전문인력	100.0	74.7	-	9.0	18.2	47.5	25.3	
유학생	100.0	94.6	0.1	28.9	36.5	29.1	5.4	
재외동포	100.0	83.9	74.5	0.0	-	9.3	16.1	
영주	100.0	97.2	68.5	14.1	1.3	13.4	2.8	
결혼이민	100.0	91.1	12.9	14.0	30.7	33.4	8.9	
기타	100.0	86.3	3.9	13.2	28.4	40.9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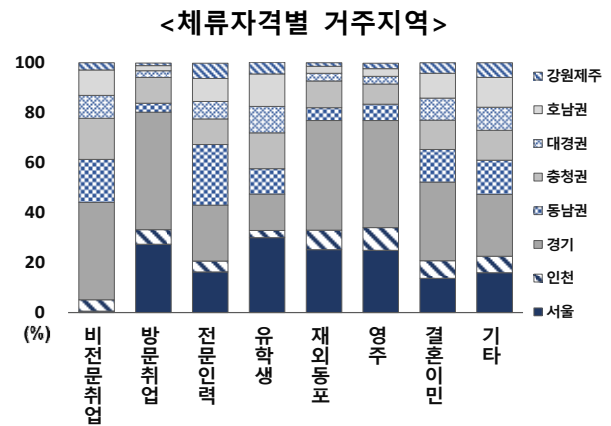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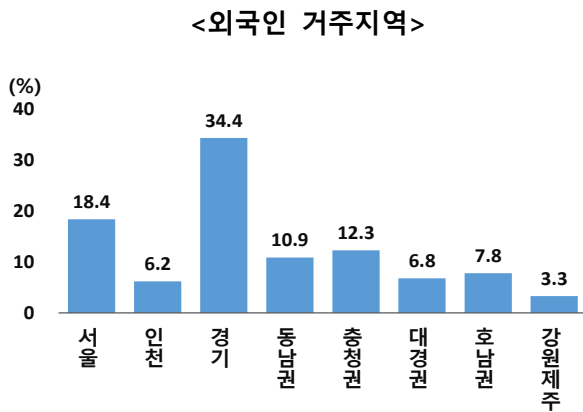
1)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네팔 등

□ (거주지역) 외국인의 59.0%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방문취업(80.3%), 영주(77.0%), 재외동포(76.9%)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음

○ 비전문취업은 경기(38.9%), 동남권(17.2%), 충청권(16.5%) 순으로 거주 비중이 높고, 서울(0.6%)이 가장 낮음

- 방문취업(47.0%), 재외동포(43.9%), 영주(42.9%), 비전문취업(38.9%), 결혼이민(31.4%)은 경기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음

- 전문인력은 동남권(24.3%) 거주 비중이 가장 높고, 유학생은 서울(30.0%)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음



< 체류자격별 거주지역별 외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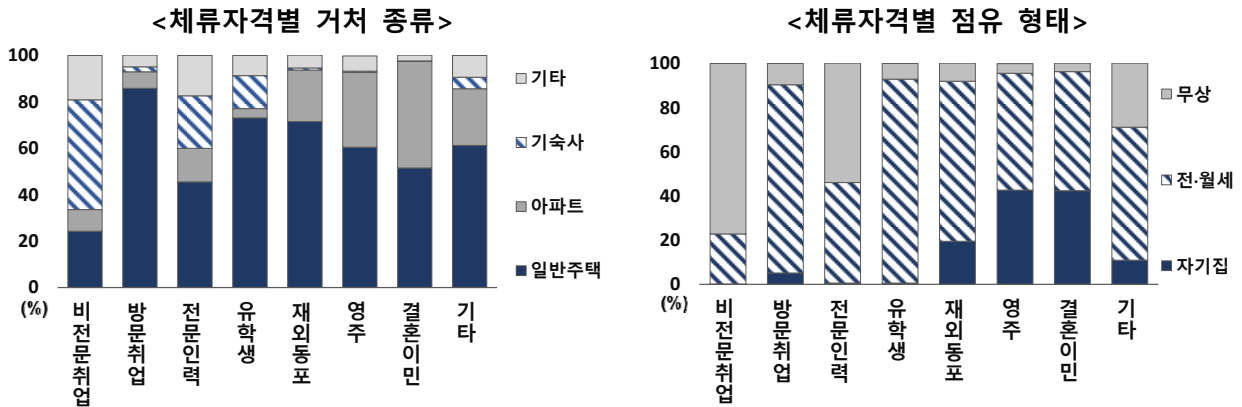
(단위: %)

	합계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외국인	100.0	59.0	18.4	6.2	34.4	10.9	12.3	6.8	7.8	3.3
비전문취업	100.0	44.1	0.6	4.6	38.9	17.2	16.5	9.1	10.2	2.9
방문취업	100.0	80.3	27.4	5.8	47.0	3.6	10.3	2.7	2.1	1.0
전문인력	100.0	43.1	16.3	4.3	22.4	24.3	10.2	7.0	9.2	6.1
유학생	100.0	47.3	30.0	2.9	14.5	10.2	14.4	10.5	13.0	4.7
재외동포	100.0	76.9	25.2	7.8	43.9	5.1	10.7	3.1	2.8	1.4
영주	100.0	77.0	24.9	9.1	42.9	6.5	8.1	3.1	3.0	2.2
결혼이민	100.0	52.2	13.7	7.1	31.4	13.1	11.7	8.9	9.9	4.2
기타	100.0	47.3	16.0	6.6	24.7	13.7	12.0	9.2	11.9	5.9

2. 외국인의 가정 생활

2-1. 거처 종류 및 점유 형태

- 외국인 거처 종류 비중은 일반주택(58.0%), 아파트(19.3%), 기숙사(13.1%) 순임
 - 방문취업(85.9%), 유학생(73.1%), 재외동포(71.5%)는 일반주택 비중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기숙사(47.3%) 비중이 높음
- 외국인 점유 형태 비중은 전·월세(59.7%), 무상(25.9%), 자기 집(14.3%) 순임
 - 전·월세 비중은 유학생(92.3%), 방문취업(85.2%), 재외동포(72.5%)가 높고, 무상은 비전문취업(77.1%), 전문인력(54.0%)이 높음



< 체류자격별 거처 종류 및 점유 형태별 외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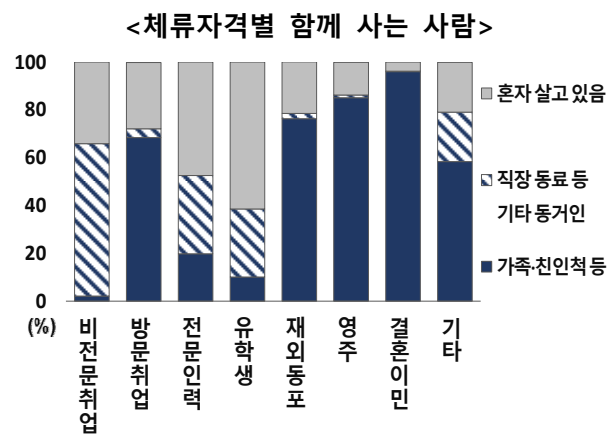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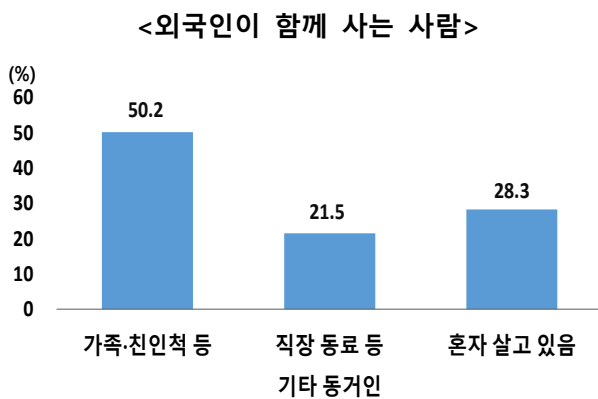
(단위: %)

	합계	거처 종류				점유 형태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¹⁾	자기집	전·월세	무상
외국인	100.0	58.0	19.3	13.1	9.5	14.3	59.7	25.9
비전문취업	100.0	24.3	9.3	47.3	19.1	0.2*	22.7	77.1
방문취업	100.0	85.9	7.1	2.1*	5.0	5.2	85.2	9.6
전문인력	100.0	45.5	14.5	22.6	17.4	0.6*	45.5	54.0
유학생	100.0	73.1	4.0	14.2	8.7	0.6*	92.3	7.1
재외동포	100.0	71.5	22.2	0.9	5.5	19.5	72.5	8.1
영주	100.0	60.5	32.2	0.5*	6.6	42.7	52.9	4.3
결혼이민	100.0	51.5	46.0	0.1*	2.5	42.4	53.9	3.8
기타	100.0	61.3	24.3	5.0	9.4	11.0	60.1	29.0

1)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고시원 찜질방 등

2-2. 함께 사는 사람

- 외국인인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친인척(50.2%) 비중이 가장 높고, 혼자 살고 있음(28.3%),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21.5%) 순임
 - 비전문취업은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과 함께 사는 비중(63.8%)이 가장 높고,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비중(2.1%)은 전체 체류자격 중 가장 낮음
- 한국에서 함께 사는 평균 인원수는 결혼이민(3.1명)이 가장 많고, 영주(2.8명), 비전문취업(2.7명), 재외동포(2.6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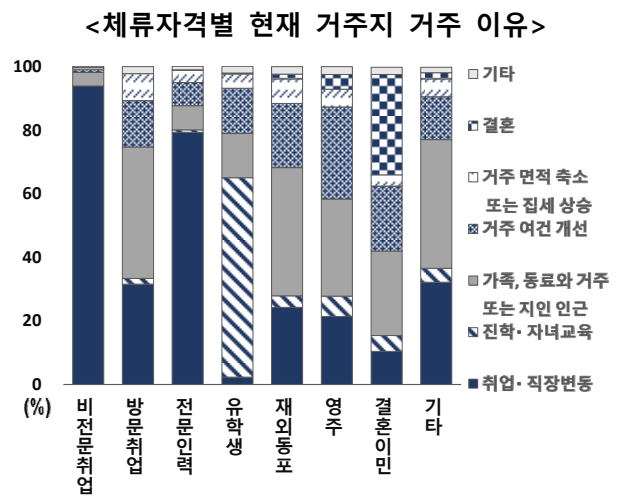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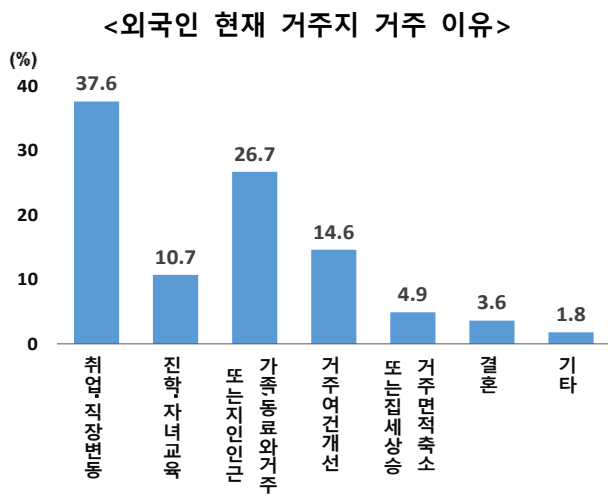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함께 사는 사람별 외국인 >

(단위: %, 명)

	함께 사는 사람 유형			함께 사는 평균 인원수
	합계	가족·친인척 등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	
외국인	100.0	50.2	21.5	2.6
비전문취업	100.0	2.1	63.8	2.7
방문취업	100.0	68.4	3.7	2.2
전문인력	100.0	19.8	32.7	2.2
유학생	100.0	10.1	28.4	1.6
재외동포	100.0	76.3	2.2	2.6
영주	100.0	85.1	1.1*	2.8
결혼이민	100.0	96.0	0.2*	3.1
기타	100.0	58.4	20.6	3.2

2-3. 현재 거주지 거주 이유

- 외국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취업 및 직장변동(37.6%), 가족·동료와 거주 또는 지인 인근(26.7%), 거주 여건 개선(14.6%) 순임
- 비전문취업(94.0%), 전문인력(79.4%)은 취업 및 직장변동에 의한 비중이 가장 높음
- 방문취업(41.4%), 재외동포(40.4%), 영주(30.6%)는 가족·동료와 거주 또는 지인 인근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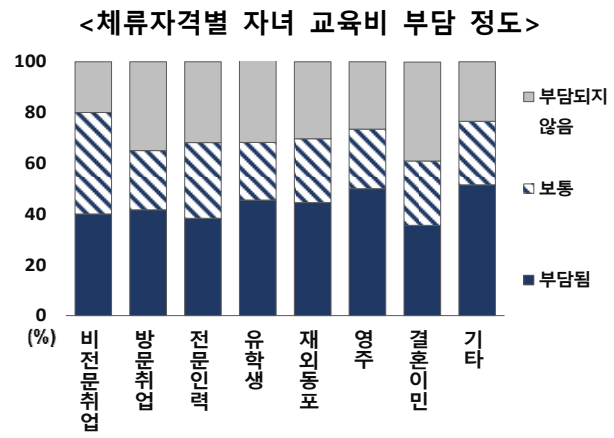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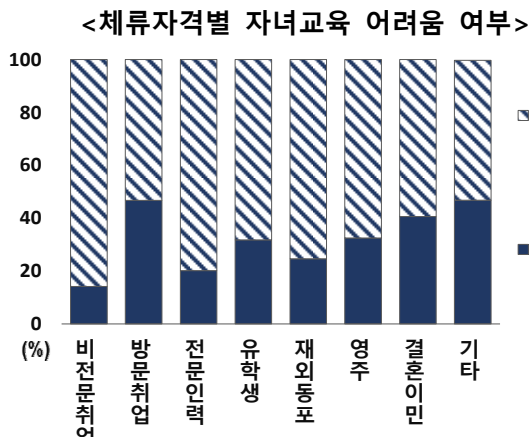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 >

(단위: %)

	합계	취업·직장변동	진학·자녀교육	가족·동료와 거주 또는 지인 인근	거주 여건 개선	거주 면적 축소 또는 집세 상승	결혼	기타
외국인	100.0	37.6	10.7	26.7	14.6	4.9	3.6	1.8
비전문취업	100.0	94.0	-	4.3	1.0	0.5*	-	0.4*
방문취업	100.0	31.6	1.8*	41.4	14.8	8.5	-	2.1*
전문인력	100.0	79.4	0.6*	7.6	7.3	3.8	0.2*	0.9*
유학생	100.0	2.3	62.8	13.8	14.3	4.5	0.3*	2.1
재외동포	100.0	24.3	3.5	40.4	20.2	7.7	1.5	2.4
영주	100.0	21.4	6.4	30.6	29.0	5.6	4.6	2.5
결혼이민	100.0	10.4	5.1	26.6	20.5	3.5	31.6	2.3
기타	100.0	32.2	4.4	40.5	13.5	5.6	2.0	1.7

2-4. 자녀교육 어려움 여부 및 교육비 부담 정도

-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 동안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음(64.4%)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음(35.7%)보다 28.7%p 높음
- 소득 대비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부담됨(44.0%)이 부담되지 않음(31.1%)보다 12.9%p 높음
 - 결혼이민은 부담되지 않음(38.9%)이 가장 높고, 결혼이민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부담됨이 높음



< 체류자격별 자녀교육 어려움 여부 및 교육비 부담 정도 >

(단위: %)

	합계	자녀교육 어려움		소득 대비 자녀 교육비 부담 정도 ²⁾		
		있었음	없었음	부담됨	보통	부담되지 않음
외국인¹⁾	100.0	35.7	64.4	44.0	24.9	31.1
비전문취업	100.0	10.0*	80.0*	40.0*	40.0*	20.0*
방문취업	100.0	46.7	53.3	41.7	23.3*	35.0
전문인력	100.0	19.1*	78.7	38.3*	29.8*	31.9*
유학생	100.0	31.8*	68.2*	45.5*	22.7*	36.4*
재외동포	100.0	24.6	75.4	44.5	25.2	30.3
영주	100.0	32.5	67.5	50.0	23.4	26.6
결혼이민	100.0	40.6	59.4	35.6	25.3	38.9
기타	100.0	46.8	52.9	51.5	25.0	23.5

1)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다닌적 있는 외국인

2) 부담됨(매우 부담이 됨 + 약간 부담이 됨), 부담되지 않음(별로 부담이 되지 않음 +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음)

3. 외국인의 고용 현황

3-1. 경제활동상태

- (취업자)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은 비전문취업(99.7%), 전문인력(99.1%), 영주(74.4%), 방문취업(74.4%)이 높음
 -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29.9%) 비중이 가장 높고, 재외동포(25.6%), 영주(10.4%) 순임
- (실업자) 체류자격별 실업자 비중은 방문취업(5.7%), 유학생(4.1%), 영주(3.8%), 재외동포(3.8%)가 높음
 - 전체 외국인 실업자 중 재외동포(25.1%)가 가장 높고, 유학생(13.4%), 영주(8.9%) 순임
- (비경제활동인구) 체류자격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유학생(79.7%)이 가장 높음
 - 전체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유학생(32.5%) 비중이 가장 높고, 재외동포(26.3%), 결혼이민(9.5%) 순임

<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 현황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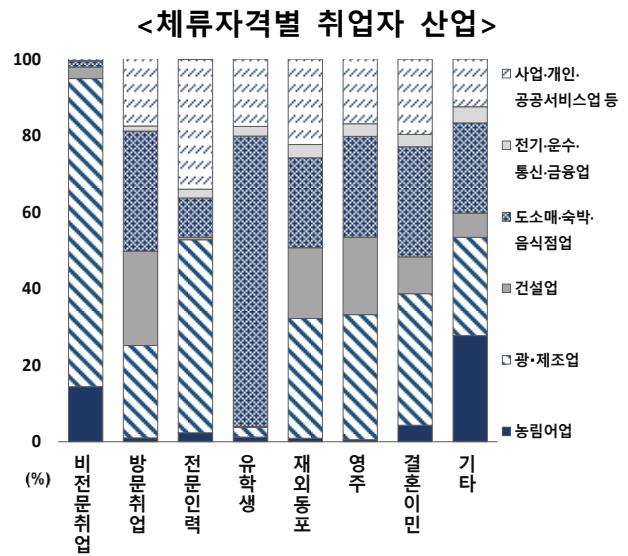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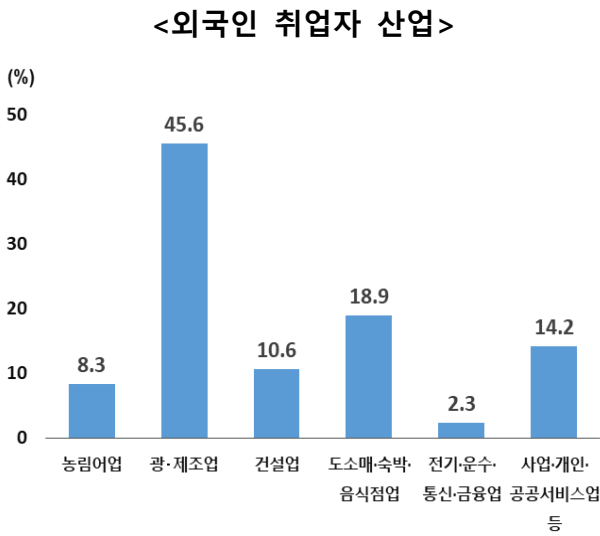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 ¹⁾				경제활동상태별 체류자격 ²⁾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외국인	100.0	64.7	3.9	31.4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100.0	99.7	0.3*	-	29.9	1.6*	-
방문취업	100.0	74.4	5.7	20.0	6.1	7.7	3.4
전문인력	100.0	99.1	0.5*	0.5*	6.4	0.5*	0.1*
유학생	100.0	16.2	4.1	79.7	3.2	13.4	32.5
재외동포	100.0	64.2	3.8	32.0	25.6	25.1	26.3
영주	100.0	74.4	3.8	21.8	10.4	8.9	6.3
결혼이민	100.0	58.7	3.4	38.0	7.1	6.9	9.5
기타	100.0	46.8	9.0	44.2	11.3	36.1	22.0

1)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비중임

2) 경제활동상태별 외국인의 체류자격 비중임

3-2. 산업별 및 직업별 취업자

- (산업)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45.6%),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14.2%), 건설업(10.6%) 순임
- 비전문취업(80.5%), 전문인력(50.5%), 결혼이민(34.4%), 영주(32.7%), 재외동포(31.3%)는 광·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유학생(75.9%), 방문취업(31.4%)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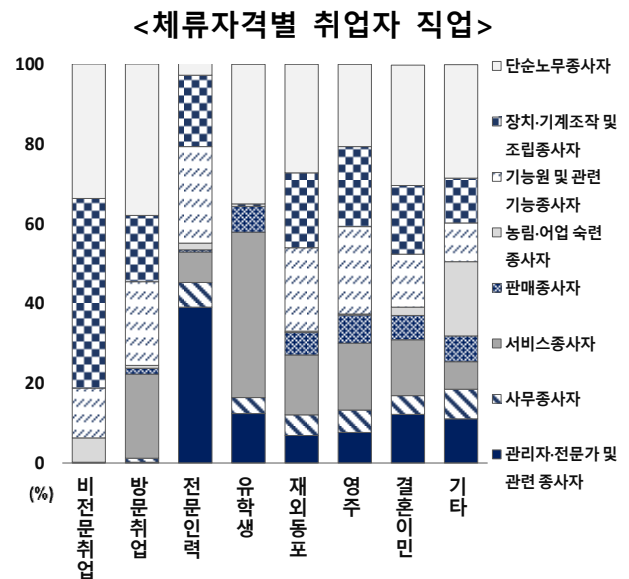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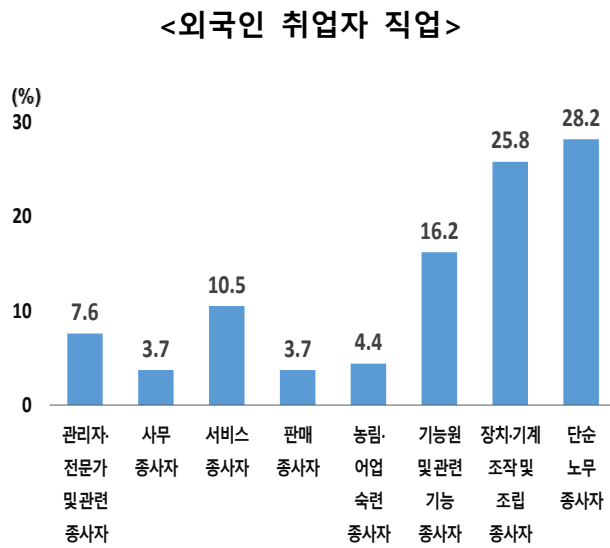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

(단위: %)

	합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취업자	100.0	8.3	45.6	10.6	18.9	2.3	14.2
비전문취업	100.0	14.4	80.5	3.0	1.6	0.1*	0.5
방문취업	100.0	1.0*	24.1	24.7	31.4	1.3*	17.7
전문인력	100.0	2.3	50.5	0.6*	10.3	2.3*	33.9
유학생	100.0	1.2*	2.5*	0.3*	75.9	2.5*	17.6
재외동포	100.0	0.9	31.3	18.5	23.5	3.5	22.3
영주	100.0	0.5*	32.7	20.2	26.4	3.3	17.0
결혼이민	100.0	4.3	34.4	9.6	28.8	3.2	19.7
기타	100.0	27.7	25.7	6.3	23.6	4.2	12.5

- (직업)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2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6.2%) 순임
- 방문취업(38.0%), 결혼이민(30.2%), 재외동포(27.2%)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비전문취업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47.6%), 전문인력은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9.1%), 유학생은 서비스 종사자(41.5%)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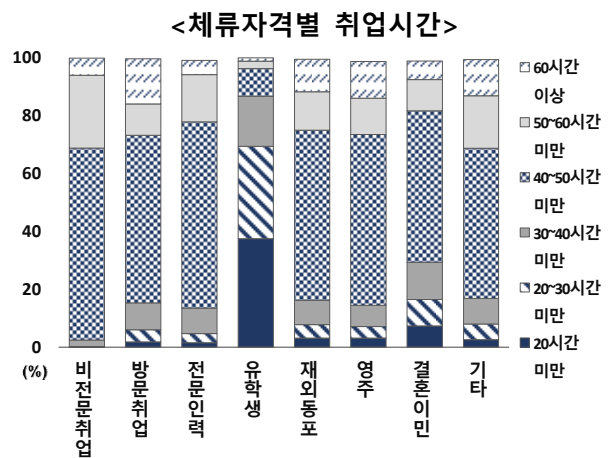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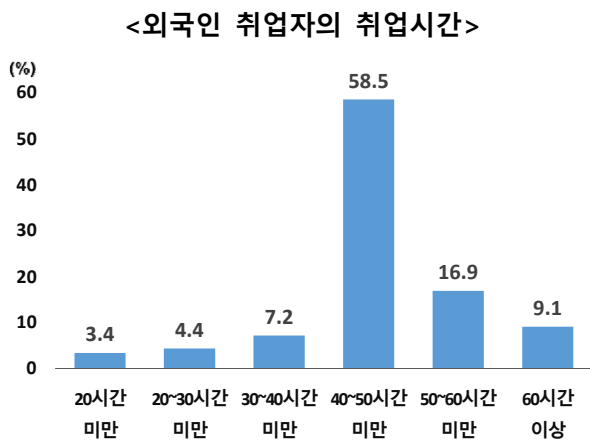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직업별 외국인 취업자 >

(단위: %)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	100.0	7.6	3.7	10.5	3.7	4.4	16.2	25.8	28.2
비전문취업	100.0	-	0.1*	0.0*	0.1*	6.1	12.5	47.6	33.7
방문취업	100.0	0.2*	1.0*	21.1	1.5*	0.7*	21.0	16.6	38.0
전문인력	100.0	39.1	6.2	7.6	0.6*	1.7*	24.2	17.9	3.1
유학생	100.0	12.4	4.0*	41.5	6.5	-	-	0.6*	35.0
재외동포	100.0	6.9	5.2	15.0	5.6	0.4*	20.9	18.8	27.2
영주	100.0	7.7	5.6	16.8	7.0	0.3*	21.9	20.1	20.6
결혼이민	100.0	12.2	4.7	14.0	6.1	2.1	13.3	17.2	30.2
기타	100.0	11.1	7.4	6.9	6.5	18.6	9.7	11.3	28.4

3-3. 취업시간별 취업자

- 외국인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40~50시간 미만 비중(58.5%)이 가장 높고, 50~60시간 미만(16.9%), 60시간 이상(9.1%) 순임
- 비전문취업(66.3%), 전문인력(64.4%), 영주(59.0%) 등은 40~50시간 미만 비중이 가장 높음
- 평균 취업시간은 비전문취업이 45.9시간으로 가장 높으며, 유학생은 23.1시간으로 가장 낮음



< 체류자격별 취업시간별 외국인 취업자 >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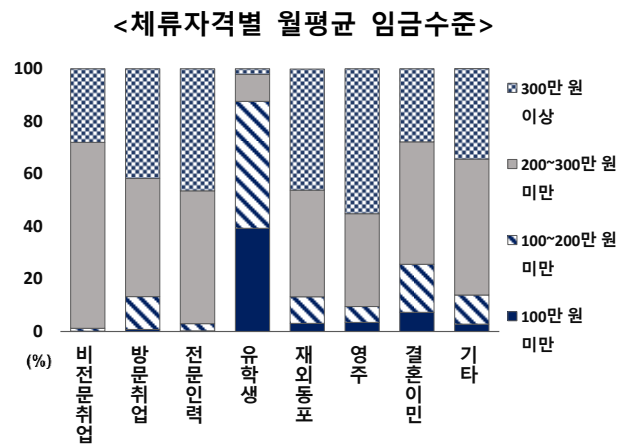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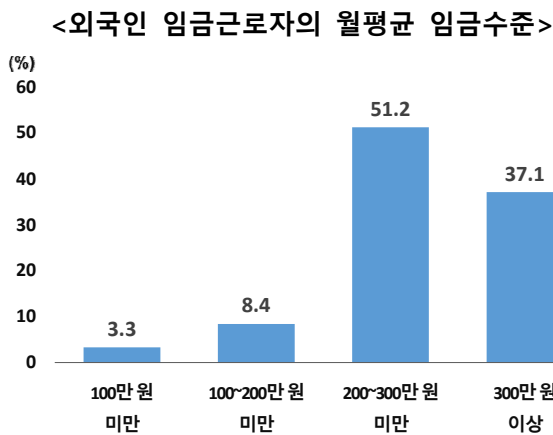
	합계 ¹⁾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취업시간
취업자	100.0	3.4	4.4	7.2	58.5	16.9	9.1	43.2
비전문취업	100.0	0.1*	0.1*	2.3	66.3	25.2	5.9	45.9
방문취업	100.0	1.8*	4.2	9.3	57.9	10.9	15.6	44.8
전문인력	100.0	1.5*	3.2	8.8	64.4	16.3	4.9	42.5
유학생	100.0	37.5	31.9	17.3	9.6	2.5*	1.2*	23.1
재외동포	100.0	3.1	4.7	8.4	58.8	13.3	11.2	43.2
영주	100.0	3.1	4.0	7.4	59.0	12.6	12.6	43.5
결혼이민	100.0	7.3	9.2	12.8	52.4	10.8	6.4	38.7
기타	100.0	2.6	5.4	8.9	51.8	18.2	12.5	43.9

1) '일시휴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합계값이 100% 미만임

3-4.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별 비중은 200~300만 원 미만이 51.2%, 300만 원 이상이 37.1%임

- 비전문취업(70.8%), 전문인력(50.5%), 결혼이민(46.6%), 방문취업(44.9%)은 200~3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음
- 영주(55.2%), 재외동포(46.1%)는 300만원 이상 비중이 가장 높고, 유학생은 100~200만 원 미만(48.3%)이 가장 높음



< 체류자격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

(단위: %)

	합계	100만 원 미만	100 ~ 200만 원 미만	200 ~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	100.0	3.3	8.4	51.2	37.1
비전문취업	100.0	0.1*	1.1	70.8	28.0
방문취업	100.0	0.8*	12.5	44.9	41.8
전문인력	100.0	0.2*	2.8	50.5	46.5
유학생	100.0	39.3	48.3	10.2	2.2*
재외동포	100.0	3.1	10.1	40.6	46.1
영주	100.0	3.5	6.0	35.3	55.2
결혼이민	100.0	7.3	18.3	46.6	27.8
기타	100.0	2.8	11.1	51.7	34.5

3-5. 실업자의 구직경로(복수응답)

□ 체류자격별 외국인 실업자의 주된 구직경로 중 친척·친구·동료의 비중은 비전문취업(70.0%), 전문인력(66.7%), 영주(66.7%)에서 높고,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기관 비중은 재외동포(56.2%), 방문취업(55.3%)에서 높음

< 체류자격별 외국인 실업자의 구직경로(복수응답) >

(단위: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기관	외국인, 동포 지원단체	친척·친구·동료	대중매체	기타 ¹⁾
실업자	47.5	23.3	50.8	36.4	7.4
비전문취업	40.0*	70.0*	70.0*	-	-
방문취업	55.3	40.4*	57.4	14.9*	-
전문인력	33.3*	-	66.7*	66.7*	-
유학생	20.7*	9.8*	53.7	57.3	22.0
재외동포	56.2	19.6	60.8	24.2	0.7*
영주	53.7	18.5*	66.7	16.7*	0.0*
결혼이민	45.2	28.6*	61.9	26.2*	2.4*
기타	49.1	25.0	33.6	49.1	10.9*

주: 복수응답으로 합계값이 100보다 클 수 있음
1) 학교·학원, 기타

3-6. 비경제활동인구 주된 활동상태

□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결혼이민은 육아 및 가사(80.6%) 비중이 높고, 유학생은 취업준비 및 통학(76.5%) 비중이 높음

<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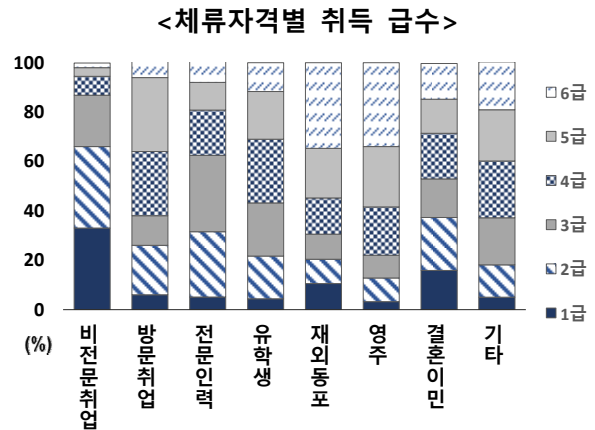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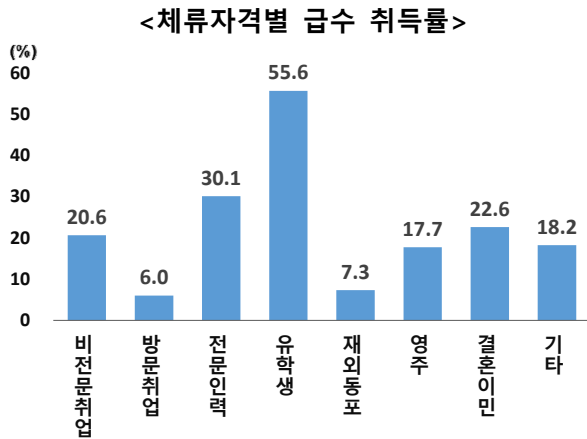
	합계	육아 및 가사	취업준비 및 통학	쉬었음	기타 ¹⁾
비경제활동인구	100.0	30.5	29.6	21.1	18.9
방문취업	100.0	36.4	4.2*	39.4	20.6
전문인력	100.0	-	33.3*	33.3*	33.3*
유학생	100.0	1.1*	76.5	3.0	19.5
재외동포	100.0	30.0	5.8	34.2	29.9
영주	100.0	41.6	8.1	29.5	20.8
결혼이민	100.0	80.6	3.2*	8.0	8.2
기타	100.0	49.0	9.8	32.7	8.4

1) 진학준비,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제약, 나이가 많음, 기타

4. 외국인의 언어 생활

4-1.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경험 유무 및 급수

-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여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 비중은 20.8%임
 - 체류자격별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 취득 비중은 유학생(55.6%), 전문인력(30.1%)이 높고, 방문취업(6.0%), 재외동포(7.3%)는 낮음
- 한국어 능력 시험 취득 급수 비중은 2급(19.4%), 4급(19.4%), 3급(19.0%) 순임
 - 6급 취득 비중은 재외동포(34.7%), 영주(34.0%)가 높고, 1급은 비전문취업(33.0%)이 가장 높음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응시 경험 및 급수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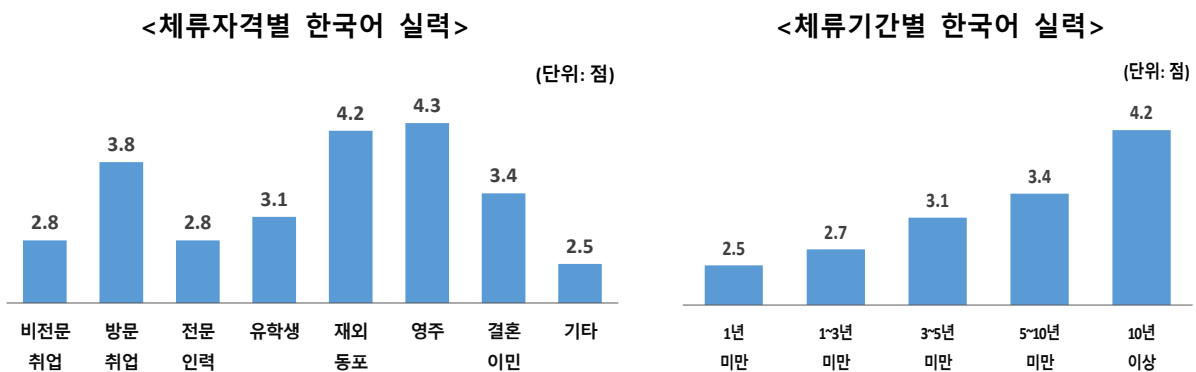
	합계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 취득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급수						불합격· 시험경험 없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외국인	100.0	20.8	(11.5)	(19.4)	(19.0)	(19.4)	(16.1)	(14.7)	79.2
비전문취업	100.0	20.6	(33.0)	(33.0)	(20.8)	(7.7)	(3.5)	(1.9)*	79.4
방문취업	100.0	6.0	(6.0)*	(20.0)*	(12.0)*	(26.0)*	(30.0)*	(8.0)*	94.0
전문인력	100.0	30.1	(5.1)*	(26.4)	(31.0)	(18.3)	(11.2)	(8.6)*	69.9
유학생	100.0	55.6	(4.4)	(17.3)	(21.5)	(25.8)	(19.3)	(11.7)	44.4
재외동포	100.0	7.3	(10.5)	(9.9)	(10.2)	(14.6)	(20.1)	(34.7)	92.7
영주	100.0	17.7	(3.2)*	(9.6)	(9.2)	(19.6)	(24.4)	(34.0)	82.2
결혼이민	100.0	22.6	(15.9)	(21.4)	(15.6)	(18.5)	(13.8)	(14.5)	77.4
기타	100.0	18.2	(5.0)*	(13.1)	(19.1)	(23.0)	(20.7)	(19.4)	81.8

주: ()는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의 급수별 비중이며, 급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를 잘함

4-2. 한국어 실력

□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이고, 영역별로 듣기(3.6점), 말하기(3.4점), 읽기(3.4점), 쓰기(3.2점) 순임

- (체류자격) 체류자격별 한국어 실력은 영주(4.3점), 재외동포(4.2점), 방문취업(3.8점) 순이고, 비전문취업(2.8점), 전문인력(2.8점)은 낮음
- (체류기간) 체류기간별 한국어 실력은 10년 이상(4.2점)이 가장 높고, 1년 미만(2.5점)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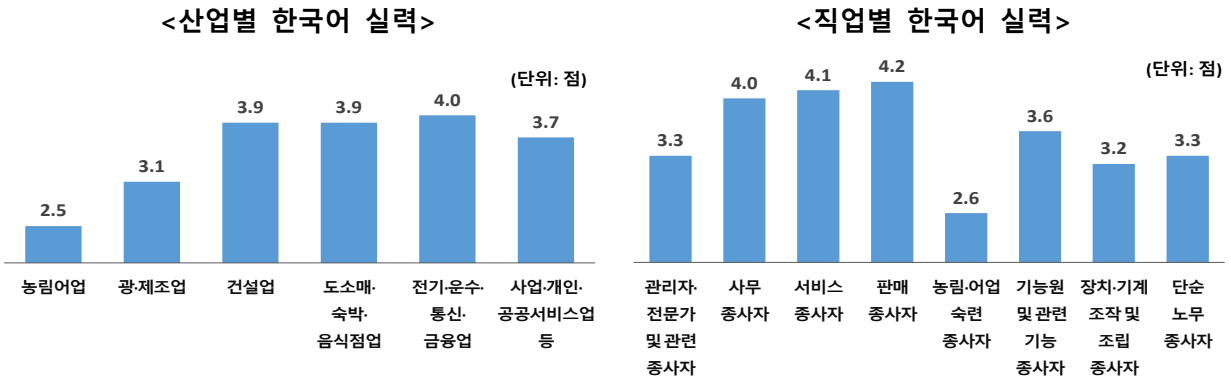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

(단위: 점)

		한국어 실력 ¹⁾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외국인		3.4	3.4	3.6	3.4	3.2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2.8	2.8	3.0	2.8	2.6
	방문취업	3.8	3.9	4.0	3.7	3.6
	전문인력	2.8	2.8	2.9	2.8	2.6
	유학생	3.1	3.0	3.3	3.3	3.0
	재외동포	4.2	4.3	4.3	4.1	4.0
	영주	4.3	4.4	4.5	4.3	4.2
	결혼이민	3.4	3.5	3.6	3.4	3.2
	기타	2.5	2.6	2.8	2.5	2.3
체류기간	1년 미만	2.5	2.5	2.6	2.5	2.3
	1~3년 미만	2.7	2.7	2.9	2.7	2.6
	3~5년 미만	3.1	3.1	3.3	3.1	2.9
	5~10년 미만	3.4	3.5	3.6	3.4	3.2
	10년 이상	4.2	4.3	4.4	4.2	4.0

주: 영역별 점수는 '1. 매우 잘함(5점), 2. 약간 잘함(4점), 3. 보통(3점), 4. 별로 못함(2점), 5. 전혀 못함(1점)'의 평균값임
 1) 한국어 실력은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점수의 평균값임

- **(산업)**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한국어 실력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점)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2.5점), 광·제조업(3.1점)에서 낮음
- **(직업)**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한국어 실력은 판매 종사자(4.2점), 서비스 종사자(4.1점), 사무 종사자(4.0점)에서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6점)는 가장 낮음



< 산업별, 직업별 외국인 취업자의 한국어 실력 >

(단위: 점)

		한국어 실력 ¹⁾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취업자		3.4	3.5	3.6	3.4	3.2
산업	농림어업	2.5	2.6	2.8	2.4	2.3
	광·제조업	3.1	3.2	3.3	3.1	2.9
	건설업	3.9	4.0	4.1	3.9	3.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9	4.0	4.1	3.9	3.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0	4.0	4.1	4.0	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3.7	3.8	3.9	3.7	3.5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	3.3	3.4	3.4	3.1
	사무 종사자	4.0	4.0	4.1	4.0	3.8
	서비스 종사자	4.1	4.2	4.2	4.1	3.9
	판매 종사자	4.2	4.3	4.3	4.2	4.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	2.7	2.8	2.5	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	3.7	3.7	3.5	3.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2	3.2	3.3	3.1	2.9
	단순노무 종사자	3.3	3.4	3.5	3.3	3.1

주: 영역별 점수는 '1. 매우 잘함(5점), 2. 약간 잘함(4점), 3. 보통(3점), 4. 별로 못함(2점), 5. 전혀 못함(1점)'의 평균값임
 1) 한국어 실력은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점수의 평균값임

5.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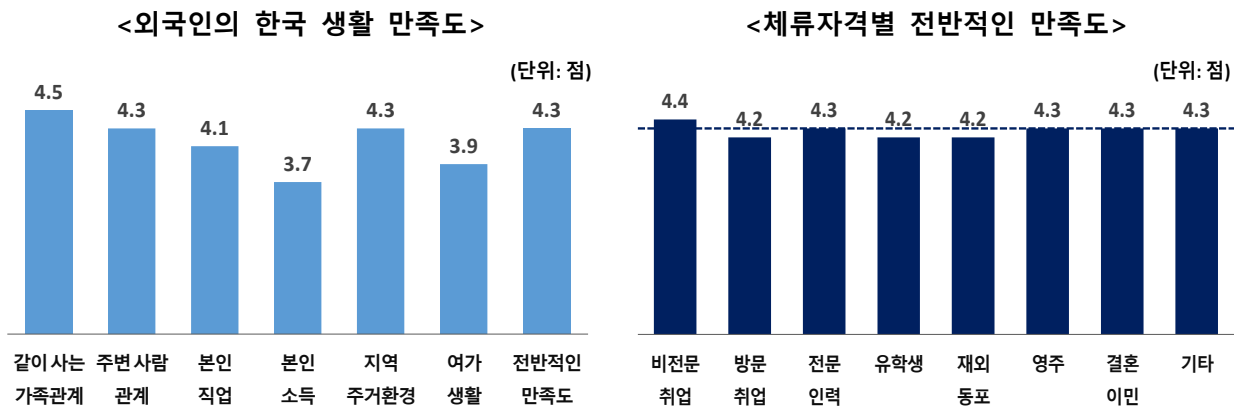
5-1. 한국 생활 만족도

□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점이고, 부문별로는 같이 사는 가족관계(4.5점)가 가장 높음

○ (체류자격) 체류자격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전문취업(4.4점)이 가장 높고, 방문취업·유학생·재외동포(4.2점)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보다 낮음

- 모든 체류자격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음

- 비전문취업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본인 소득 만족도가 가장 낮고, 비전문취업은 여가생활 만족도(4.0점)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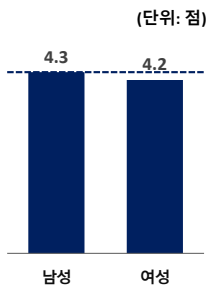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만족도 >

	(단위: 점)						
	전반적인 만족도	같이 사는 가족관계	주변 사람관계	본인 직업	본인 소득	지역 주거환경	여가 생활
외국인	4.3	4.5	4.3	4.1	3.7	4.3	3.9
비전문취업	4.4	4.3	4.3	4.3	4.1	4.3	4.0
방문취업	4.2	4.5	4.3	3.9	3.5	4.2	3.6
전문인력	4.3	4.5	4.3	4.2	3.8	4.4	4.1
유학생	4.2	4.5	4.1	3.8	3.3	4.3	4.0
재외동포	4.2	4.5	4.3	4.0	3.5	4.2	3.8
영주	4.3	4.6	4.3	4.0	3.5	4.3	3.8
결혼이민	4.3	4.6	4.3	4.0	3.5	4.3	3.9
기타	4.3	4.6	4.3	4.1	3.8	4.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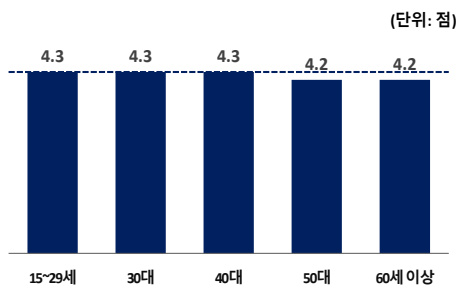
주: 점수는 '1. 매우 만족(5점), 2. 약간 만족(4점), 3. 보통(3점), 4. 약간 불만족(2점), 5. 매우 불만족(1점)'의 평균값임

- (성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성(4.3점)이 여성(4.2점)보다 높음
 - 부문별 만족도는 같이 사는 가족관계 만족도(남성 4.5점, 여성 4.6점)가 가장 높고, 본인 소득 만족도(남성 3.8점, 여성 3.5점)는 가장 낮음
- (연령대) 연령대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50대 및 60세 이상(4.2점)이 전체 외국인의 전반적인 만족도(4.3점)보다 낮음
- (체류기간) 체류기간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3년~5년 미만(4.2점)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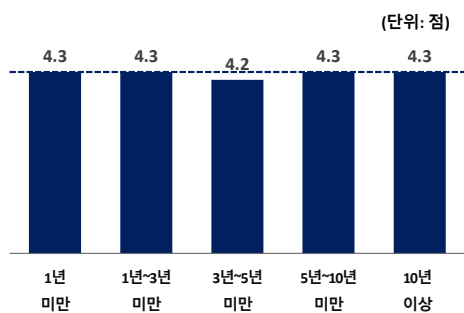
<성별 전반적인 만족도>



<연령대별 전반적인 만족도>



<체류기간별 전반적인 만족도>



< 성별, 연령대별, 체류기간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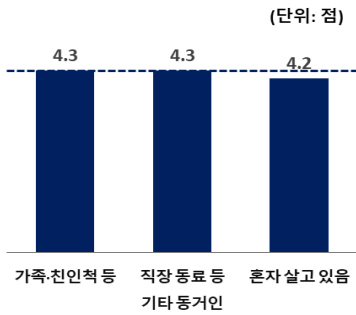
(단위: 점)

		전반적인 만족도	같이 사는 가족관계	주변 사람관계	본인 직업	본인 소득	지역 주거환경	여가 생활
외국인		4.3	4.5	4.3	4.1	3.7	4.3	3.9
성별	남성	4.3	4.5	4.3	4.1	3.8	4.3	3.9
	여성	4.2	4.6	4.2	3.9	3.5	4.3	3.9
연령대	15~29세	4.3	4.5	4.2	4.1	3.8	4.3	4.0
	30대	4.3	4.6	4.3	4.1	3.8	4.3	4.0
	40대	4.3	4.6	4.3	4.1	3.7	4.3	3.8
	50대	4.2	4.5	4.3	4.0	3.6	4.3	3.7
	60세 이상	4.2	4.5	4.2	3.9	3.5	4.2	3.7
체류기간	1년 미만	4.3	4.5	4.3	4.1	3.9	4.3	4.0
	1년~3년 미만	4.3	4.5	4.3	4.1	3.9	4.4	4.0
	3년~5년 미만	4.2	4.5	4.2	4.1	3.8	4.3	3.9
	5년~10년 미만	4.3	4.5	4.3	4.1	3.7	4.3	3.9
	10년 이상	4.3	4.5	4.3	4.0	3.5	4.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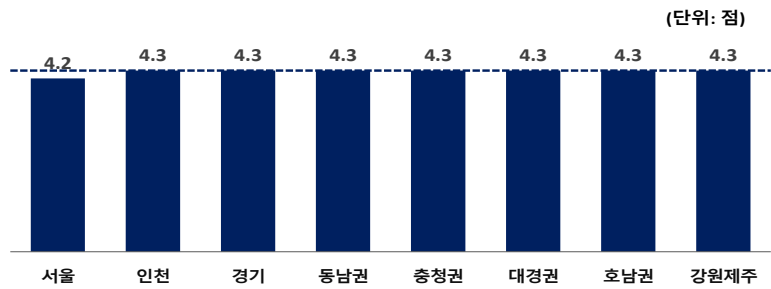
주: 점수는 '1. 매우 만족(5점), 2. 약간 만족(4점), 3. 보통(3점), 4. 약간 불만족(2점), 5. 매우 불만족(1점)'의 평균값임

-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혼자 살고 있음(4.2점)이 전체 외국인의 전반적인 만족도(4.3점)보다 낮음
 - 부문별 만족도는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사람의 본인 소득 만족도(3.5점)가 가장 낮음
- **(거주지역)** 거주지역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서울(4.2점)이 가장 낮음

<함께 사는 사람별 전반적인 만족도>



<거주지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 함께 사는 사람별, 거주지역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만족도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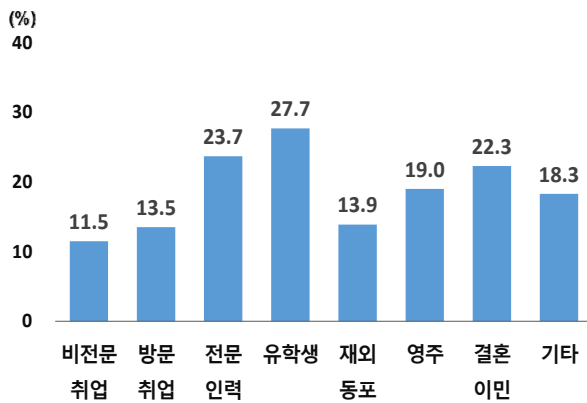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	같이 사는 가족관계	주변 사람관계	본인 직업	본인 소득	지역 주거환경	여가 생활
외국인		4.3	4.5	4.3	4.1	3.7	4.3	3.9
함께 사는 사람	가족·친인척 등	4.3	4.5	4.3	4.0	3.5	4.3	3.8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	4.3	-	4.3	4.2	4.0	4.3	4.0
	혼자 살고 있음	4.2	-	4.2	4.1	3.7	4.3	3.9
거주 지역	서울	4.2	4.5	4.2	4.0	3.5	4.3	3.9
	인천	4.3	4.6	4.3	4.0	3.6	4.4	3.9
	경기	4.3	4.6	4.3	4.1	3.7	4.3	3.8
	동남권	4.3	4.4	4.3	4.1	3.9	4.4	4.0
	충청권	4.3	4.5	4.2	4.1	3.8	4.3	3.8
	대경권	4.3	4.5	4.2	4.1	3.9	4.3	4.0
	호남권	4.3	4.5	4.3	4.2	3.9	4.3	4.0
	강원·제주	4.3	4.6	4.3	4.1	3.9	4.3	4.1

주: 점수는 '1. 매우 만족(5점), 2. 약간 만족(4점), 3. 보통(3점), 4. 약간 불만족(2점), 5. 매우 불만족(1점)'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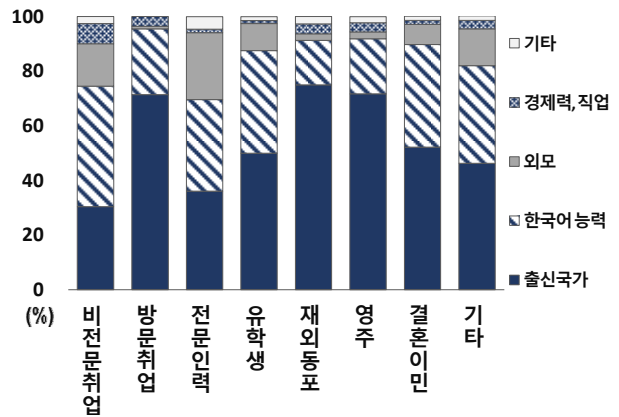
5-2. 차별 경험

-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이며, 체류자격별로 유학생(27.7%)이 가장 높음
-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차별받은 주된 이유로는 비전문 취업은 한국어 능력(44.1%)이 가장 높고, 비전문취업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는 출신국가가 가장 높음

<체류자격별 차별 경험 있음>



<체류자격별 차별받은 주된 이유>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차별 경험 및 이유 >

(단위: %)

	합계	없음	있음	차별받은 주된 이유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외모	경제력, 직업	기타
외국인	100.0	82.6	17.4	(54.5)	(31.2)	(9.1)	(3.1)	(2.1)
비전문취업	100.0	88.5	11.5	(30.4)	(44.1)	(15.5)	(7.4)	(2.6)*
방문취업	100.0	86.5	13.5	(71.4)	(24.1)	(0.9)*	(3.6)*	-
전문인력	100.0	76.3	23.7	(36.1)	(33.5)	(24.5)	(1.3)*	(4.5)*
유학생	100.0	72.3	27.7	(50.0)	(37.5)	(9.9)	(1.1)*	(1.4)*
재외동포	100.0	86.1	13.9	(75.0)	(16.2)	(2.5)	(3.6)	(2.7)
영주	100.0	81.0	19.0	(71.7)	(20.1)	(2.6)*	(3.3)*	(2.2)*
결혼이민	100.0	77.7	22.3	(52.2)	(37.5)	(7.4)	(1.5)*	(1.5)*
기타	100.0	81.7	18.3	(46.3)	(35.7)	(13.5)	(3.1)*	(1.6)*

주: ()는 차별 경험이 있음에 대한 차별받은 주된 원인별 비중임

부 록

- 항목특성별 통계표
-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개요
- 외국인의 체류자격(장기 및 영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부록1 항목특성별 통계표

< 성·연령대·교육수준별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

(단위: %)

	외국인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남성	여성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19.4	30.6	4.2	29.5	32.0	11.7	-	-	15.7	19.8	22.6	15.9
방문취업	5.3	5.3	5.4	1.4	2.2	7.7	19.5	3.0	8.2	8.4	5.5	2.5
전문인력	4.2	5.2	2.8	3.9	7.6	4.8	1.0	0.2	1.9	2.1	2.7	8.0
유학생	12.8	10.4	16.2	38.9	4.2	0.6	-	-	-	0.1*	20.9	12.2
재외동포	25.8	22.6	30.1	6.7	16.3	27.6	38.6	72.1	34.5	32.7	22.8	23.7
영주	9.1	8.0	10.6	1.2	7.4	15.3	17.9	13.6	7.2	11.5	9.0	8.4
결혼이민	7.8	2.8	14.7	4.4	11.7	12.1	7.0	3.4	8.7	7.4	7.1	8.9
기타	15.6	15.2	16.1	14.0	18.6	20.2	15.9	7.6	23.8	18.0	9.6	20.4

<국적별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

(단위: %)

	외국인	아시아	한국계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아시아 이외
			한국계 중국	중국	중국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19.4	21.4	-	0.5	17.4	46.8	-	
방문취업	5.3	5.8	14.5	-	-	2.0	0.2	
전문인력	4.2	3.4	-	4.4	5.1	5.6	11.8	
유학생	12.8	13.3	0.0	43.3	31.2	10.4	7.7	
재외동포	25.8	23.8	60.8	0.0	-	6.7	46.1	
영주	9.1	9.7	19.6	14.9	0.8	3.4	2.8	
결혼이민	7.8	7.8	3.2	12.8	16.0	7.3	7.7	
기타	15.6	14.8	1.9	24.0	29.6	17.8	23.7	

<거주지역별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단위: %)

	외국인	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제주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19.4	0.7	14.4	22.0	30.5	26.0	26.2	25.6	17.3
방문취업	5.3	7.9	5.0	7.3	1.8	4.4	2.1	1.4	1.6
전문인력	4.2	3.7	2.9	2.7	9.3	3.5	4.4	4.9	7.8
유학생	12.8	20.8	6.0	5.4	12.0	14.9	19.8	21.4	18.3
재외동포	25.8	35.2	32.5	32.9	12.1	22.4	11.8	9.2	10.9
영주	9.1	12.3	13.4	11.3	5.4	6.0	4.2	3.5	6.0
결혼이민	7.8	5.8	9.0	7.1	9.4	7.4	10.3	10.0	9.9
기타	15.6	13.6	16.8	11.2	19.5	15.2	21.2	24.0	28.1

< 산업별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취업자 >

(단위: %)

	취업자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등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29.9	52.2	52.8	8.4	2.5	0.9*	1.0
방문취업	6.1	0.7*	3.2	14.1	10.1	3.5*	7.6
전문인력	6.4	1.8	7.1	0.4*	3.5	6.5*	15.3
유학생	3.2	0.5*	0.2*	0.1*	12.8	3.5*	4.0
재외동포	25.6	2.8	17.6	44.4	31.7	39.4	40.1
영주	10.4	0.6*	7.5	19.7	14.5	15.2	12.4
결혼이민	7.1	3.7	5.3	6.4	10.8	10.0	9.8
기타	11.3	37.8	6.4	6.7	14.1	20.8	9.9

< 직업별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취업자 >

(단위: %)

	취업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29.9	-	0.5*	0.1*	0.8*	41.8	23.0	55.2	35.8
방문취업	6.1	0.1*	1.6*	12.3	2.4*	0.9*	7.9	3.9	8.2
전문인력	6.4	33.1	10.7	4.6	1.1*	2.5*	9.6	4.5	0.7
유학생	3.2	5.2	3.5*	12.7	5.6	-	-	0.1*	4.0
재외동포	25.6	23.0	36.1	36.6	38.7	2.5*	33.0	18.7	24.7
영주	10.4	10.5	15.8	16.7	19.9	0.7*	14.0	8.1	7.6
결혼이민	7.1	11.3	9.1	9.5	11.8	3.4	5.8	4.7	7.6
기타	11.3	16.5	22.5	7.5	19.9	48.2	6.8	5.0	11.4

< 월평균 임금수준별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임금근로자 >

(단위: %)

	임금근로자	100만 원 미만	100 ~ 200만 원 미만	200 ~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전문취업	31.6	0.6*	4.2	43.7	23.9
방문취업	6.4	1.6*	9.4	5.6	7.2
전문인력	6.7	0.3*	2.2	6.7	8.5
유학생	3.4	40.2	19.4	0.7	0.2*
재외동포	24.9	23.4	29.7	19.7	30.9
영주	9.6	10.1	6.8	6.6	14.3
결혼이민	6.4	14.2	14.0	5.9	4.8
기타	11.0	9.2	14.4	11.1	10.2

부록2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체류실태와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인력정책 등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20018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 모집단

- 2024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서 91일 이상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19. 1. 1. ~ '24. 5. 15.)의 귀화허가자

*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와 불법체류자는 제외

□ 조사대상

- 외국인 또는 귀화허가자 개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명부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표본: 2만명)
 - 귀화허가자: 외국인이었다가 '19년 1월 1일 이후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표본: 5천명)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2024. 5. 15.(월)
- 조사대상기간(고용부문): 2024. 5. 12.(일) ~ 5. 18.(토)
- 조사실시기간: 2024. 5. 21.(화) ~ 6. 4.(화)(15일간)

□ 표본 추출방법: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 조사방법

- 지방통계(지)청(사무소)에서 고용한 조사담당자가 표본 응답자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필요시 응답자 직접 작성 허용)

□ 조사항목

- (공통항목)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
 - 8개 부문(기본항목, 고용 I, 보건, 한국생활, 주거 및 생활환경, 자녀교육, 한국어능력, 체류사항) 126개 조사항목

부문	주요조사항목
기본 항목(36)	성별, 출생지, 종교, 국적, 학력, 배우자, 가구원 등
고용 I (30)	취업, 일한 시간, 직장, 임금 등
보건(3)	건강상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한국생활(22)	가족·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직업·소득·주거환경·전반적 만족도, 어려운 점, 여가생활, 차별 경험 등
주거 및 생활환경(3)	거주지 이동 유무 등
자녀교육(6)	자녀교육에서 겪은 어려움, 자녀학교 참여도, 교육비 부담 정도 등
한국어 능력(14)	한국어 실력,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학습 여부 및 학습 기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응시 여부 등
체류사항(12)	한국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 유무 및 내용, 향후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연장 방법 등

- (특성항목) 재외동포(F-4), 영주(F-5) 체류자격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

- 체류자격에 따라 관련 정책에 필요한 12개(재외동포), 38개(영주·귀화허가자) 조사항목으로 구성

□ 조사항목 주기

항목/주기	홀수 연도(고용)	짝수 연도(체류)
공통항목	고정(매년)	• 기본항목 • 고용 I • 체류사항 • 한국어 능력
	순환(2년)	• 고용 II • 구직경험 • 보건 • 한국생활 • 교육 • 소득과 소비 • 주거 및 생활환경 • 자녀교육
특성항목(2년)	• 비전문취업 • 유학생	• 영주/귀화허가자 • 재외동포

□ 주요 용어

- ☞ 이민자: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총칭
-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 ☞ 귀화허가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 15세 이상 인구: 2024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함께 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본 조사에서는 단기를 제외한 장기 및 영주체류자격을 조사대상으로 함)

부록3 외국인의 체류자격(장기 및 영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개정 2024. 10. 29.> 전문(全文) 임

■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 (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p>11. 기업투자 (D-8)</p>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p>12. 무역경영 (D-9)</p>	<p>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3. 구직 (D-10)</p>	<p>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4. 교수 (E-1)</p>	<p>「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p>
<p>15. 회화지도 (E-2)</p>	<p>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p>
<p>16. 연구 (E-3)</p>	<p>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7. 기술지도 (E-4)</p>	<p>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p>
<p>18. 전문직업 (E-5)</p>	<p>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9. 예술흥행 (E-6)</p>	<p>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p>
<p>20. 특정활동 (E-7)</p>	<p>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p>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p>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23. 방문동거 (F-1)	<p>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24. 거주 (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자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p>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삭제 <2022. 12. 27.></p>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25. 동반 (F-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나. 활동범위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E 및 대분류G부터 대분류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임업(020) 중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다만, 다음 사업자(법인만 해당한다)의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마) 연근해 어업(03112)

바) 양식 어업(0321)

사) 금속 광업(06)

아)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다음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삭제 <2022. 12. 27.>

타) 삭제 <2022. 12. 27.>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삭제 <2022. 12. 27.>

거) 삭제 <2022. 12. 27.>

너) 삭제 <2022. 12. 27.>

더) 삭제 <2022. 12. 27.>

러) 삭제 <2022. 12. 27.>

머) 삭제 <2022. 12. 27.>

버) 삭제 <2022. 12. 27.>

서) 삭제 <2022. 12. 27.>

- 어) 삭제 <2022. 12. 27.>
 - 저) 삭제 <2022. 12. 27.>
 - 처) 삭제 <2022. 12. 27.>
 - 커) 삭제 <2022. 12. 27.>
 - 터) 삭제 <2022. 12. 27.>
 - 퍼) 삭제 <2022. 12. 27.>
 - 허) 삭제 <2022. 12. 27.>
 - 고) 삭제 <2022. 12. 27.>
 - 노) 삭제 <2022. 12. 27.>
 - 도) 삭제 <2022. 12. 27.>
 - 로) 삭제 <2022. 12. 27.>
 - 모) 삭제 <2022. 12. 27.>
 - 보) 삭제 <2022. 12. 27.>
 - 소) 삭제 <2022. 12. 27.>
 - 오) 삭제 <2022. 12. 27.>
 - 조) 삭제 <2022. 12. 27.>
 - 초) 삭제 <2022. 12. 27.>
 - 코) 삭제 <2022. 12. 27.>
 - 토) 삭제 <2022. 12. 27.>
 - 포) 삭제 <2022. 12. 27.>
 - 호) 삭제 <2022. 12. 27.>
 - 구) 삭제 <2022. 12. 27.>
 - 누) 삭제 <2022. 12. 27.>
 - 두) 삭제 <2022. 12. 27.>
 - 루) 삭제 <2022. 12. 27.>
-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 가) 수도업(36)
 - 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한다.
 - (1) 육상 여객 운송업(492)
 - (2)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수상 운송업(50)
 - 바) 항공 운송업(51)
 - 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 (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4)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p> <p>(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 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p> <p>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p> <p>자) 우편 및 통신업(61)</p> <p>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p> <p>카) 정보서비스업(63)</p> <p>타) 금융업(64)</p> <p>파) 보험 및 연금업(65)</p> <p>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p> <p>거) 부동산업(68)</p> <p>너) 연구개발업(70)</p> <p>더) 전문 서비스업(71)</p> <p>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p> <p>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p> <p>버)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p> <p>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p> <p>어) 교육 서비스업(85)</p> <p>저) 국제 및 외국기관(99)</p>
30. 기타 (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개정 2023. 12. 12.> 전문(全文) 임

■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 (기 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9.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부동산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11차 개정(2024년) 기준

1 관리자

- 11 의회·정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부서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 25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 2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 사무종사자

- 31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 32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 3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 34 금융 사무직
- 3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 3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 37 일반 지원 사무직
-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 43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 예)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85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 예)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가사도우미 등

※ 제8차 개정(2024년) 기준